

개정 전	개정 후
<p><⑥ 농어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§13②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지매매사업 등(1호) : <u>취득세 50%</u> - 생산기반정비(1-2호) : 취득세 50%, 재산세 75% - 경영회생지원(2호) : 취득세·재산세 50% (농업인 환매시 취득세 100%) - 과원 규모화 사업(3호) : 취득세 50% - 농지시장안정사업(5호) : <u>취득세 50%</u> - 그 외 사업(1-3호, 4호, 4-2호) : <u>취득세 25%~50%</u>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감면율 축소 및 종료, 일몰 3년 연장 ○ (감면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지매매사업 등(1호) : <u>취득세 30%</u> - 생산기반정비(1-2호) : 취득세 50%, 재산세 75% - 경영회생지원(2호) : 취득세·재산세 50% (농업인 환매시 취득세 100%) - 과원 규모화 사업(3호) : 취득세 50% - 농지시장안정사업(5호) : <u>취득세 30%</u> - 그 외 사업(1-3호, 4호, 4-2호) : <u>종료</u> 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<p><⑦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시설등§15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율) 취득세·재산세 50%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현행 3년 연장 ○ (감면율) 취득세·재산세 50% 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<p><⑧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유통사업용 부동산등§15②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율) 취득세 100%* 재산세(도시지역분포함) 100%* <u>(최소납부세제 배제)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00% 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× 지자체 투자 비율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일몰 3년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 유예 종료 ○ (감면율) 취득세 100%* 재산세(도시지역분포함) 100%* <u>(최소납부세제 적용)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00% 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× 지자체 투자 비율 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
< 개정내용 >

- (①) 농지 확보 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면 연장
- (②) 산림보호·관리 및 임업 경제성 제고를 위해 감면 연장하되,
 - 입업 지원이라는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보전산지에도 “임업 직접 사용” 요건 추가